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89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시간(근무시간)이 주5일근무 시행전의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어 주5일근무 시행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동·하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또한 토요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현재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 잦은 재위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시간을 종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동절기 및 하절기 구분없이 09:00부터 18:00까지로 변경 (안 제4조 제2항)

○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함(안 제4조 제3항)

○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안 제17조 제3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복지관 운영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한다.

③ 복지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탁 계약기간은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의 이용) ① (생략) ②복지관 이용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한다. <신설>	**제4조(시설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복지관 운영은 09시부터 18시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한다. ③복지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관리) ① (생략) ② (생략) ③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3년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9.12.1] [법률 제9766호, 2009.6.9, 일부개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 4. 30, 2008.2.29>
③ 삭제 <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2008.11. 5, 일부개정]

제23조 (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2004.9.6>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09. 12 조례 제871호]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위탁 공고시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2006.9.6, 일부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천시 공고 제 2009 - 1047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8. 5

제 천 시 장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시간(근무시간)이 주5일근무 시행 전 의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어 주5일근무 시행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동·하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또한 토요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현재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 잦은 재위탁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용시간을 종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 하여 운영하던 것을 동절기 및 하절기 구분없이 09:00부터 18:00까지로 개정 (안 제4조 제3항)

○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안 제17조 제3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

제천시장 (참조 경로복지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11, FAX 641 - 5689 담당자 : 한시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경로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주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기간이 종료되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2009-1047호
3. 공고기간 : 2009.08.05 ~ 08.25(20일간)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94회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 "끝"